

본회 사무기구 및 인사규정

제 1 조(사무기구의 조직)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여기에는 총무부와 편집부를 둔다. 사무국에는 사무국장을, 각 부에는 부장을 포함한 기타 직책에 상응하는 직원을 둔다.

제 2 조(사무국 업무 분장) 총무부와 편집부는 다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총무부 : 회계 및 재정, 행사 관리, 기타 업무

편집부 : 간행물 편집 및 발간,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

제 3 조(사무직원의 정원) 각 부에는 약간명의 직원을 두며 그 정원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 4 조(직원자격)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소지자라야 하며, 기능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직종에 관한 자격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라야 한다.

제 5 조(임면) 직원은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할 수 없으며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고할 수 있다.

- (1) 정년이 되었을 때
- (2)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
- (3) 징계면직의 결정이 있을 때

제 6 조(평가) 직원은 매년 근무평가를 받고, 이를 기초로 연봉제에 따른 보수 및 재임용을 결정한다

- (1) 직원은 직원업무평가위원회로부터 평가를 받으며, 본 위원회는 회장, 총무이사,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된다.
- (2) 직원업무평가위원회의 평가점수는 직원의 보수 산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, 평가점수가 저조한 경우 재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이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.
- (3) 평가 항목은 직원업무평가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, 직원의 업무전문성, 회원대응도 및 성실성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.

제 7 조(징계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가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행한다.

- (1) 본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- (2) 고의 또는 과실로 본회에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
- (3) 근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

제 8 조(징계의 종류)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- (1) 면직 : 직원의 신분을 제적하여 면직한다.
- (2) 정직 : 6 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
- (3) 감봉 : 6 개월 이하의 기간 중 보수의 1/10 을 감한다.
- (4) 견책 : 총무이사에게 경위서를 제출하게 한다.

제 9 조(보수 및 퇴직금) 직원의 보수와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.

- (1) 직원의 보수는 매년초에 계약에 의하여 연봉제로 한다.

(2) 연봉이외의 기타 수입은 지급 받을 수 없다.

(3) 퇴직금은 매년 초 연봉계약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.

제 10 조(출장비) 직원이 학회업무로 출장을 갈 때 소요경비(교통비, 식비, 일비 등)는 출장비는 실비로 한다.

제 11 조(정년) 직원의 정년은 55 세로 한다.

제 12 조(사무조직 변경) 사무조직 및 기구를 변경하거나 별도의 기구 및 조직을 설치코자 할 때에는 본회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.